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

「해외건설촉진법」 제1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조에 따라 고시한 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-1323호)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위탁받는 기관

- 「해외건설촉진법」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

2. 위탁업무

- 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

3. 위탁기간

-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